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5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1.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및 제8조) ·	3
2. 일자리사업 평가 업무의 한국고용정보원 출연 근거 마련 (안 제	
18조)	9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7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심화되고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하

고, 시책 수립·시행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도록 규정(안 제6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별 고용촉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8조).

다.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

IV. 검토의견

1.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및 제8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을 ‘지역고용 활성화’로 정의하고, 국가가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지역별 고용촉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u>활성화</u> 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 11.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 · 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활성화 등(이하 “지역고용 활성화”</u> <u>라 한다)을</u> ----- ----- 9. ~ 11. (현행과 같음) ② ----- ----- -----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④ (생략)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④·⑤ (생략)	----- ----- ----- ----- ----- ----- ----- --. 특히 <u>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역별 고용촉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가가 수립·시행하여야 할 시책 중 하나로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노력하여야 할 사

항 중 하나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지역 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국가가 수립·시행하여야 할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시책 중 하나인 지역고용 촉진에 관한 기본 방향을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고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시·도지사도 하여금 지역고용 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그러나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24년 시·도별 직업을 전입사유로 한 순이동자 수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의 경우 순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도별 직업을 전입사유로 한 순이동자 수(2024년)]

(단위 : 천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45.7	-9.3	-11.8	1.3	-8.6	-0.4	-1.4	0.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7	-4.3	1.2	7.6	-7.4	-3.1	-4.5	-12.1	-1.0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5.1.24.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 일자리 부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 청년 취업난, 주택 부족 등 국가적 경제·사회 문제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고용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상 국가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을 ‘지역 고용 활성화’로 정의하고,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별 고용촉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지역경제를 고려한 지역고용 관련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의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정의하면서 현행법상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고용 활성화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취업자의 고용안정·고용유지·직업훈련, 지역 기업에 대한 인력확보 지원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기존의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상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등’을 포함하

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별 고용촉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이미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명시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별 고용촉진 등’을 추가하여 지역고용 활성화의 내용을 부연 설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 전환, 지역소멸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고용 활성화가 주요한 과제이나 그간 지역고용 관련 별도의 법적 체계·기반이 미흡하여 지역고용 정책이 국가 고용정책의 부수적·보완적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지역고용 활성화의 법적 체계 및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일자리사업 평가 업무의 한국고용정보원 출연 근거 마련 (안 제18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지원’을 추가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 ③ (생략)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지원</u>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제6호----- -----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 ----- ----- 제7호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추진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⁴⁾

고용노동부는 동 사항과 관련한 사업을 ‘일자리사업평가’ 항목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수행하고 있는바, 한국고용정보원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평가⁵⁾하여 우수, 양호, 개선필요, 감액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재정법」 제12조⁶⁾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5)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 현장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예산 실행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은 그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제4항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할 수 있는 사업으로 ①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②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④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⑤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⑥앞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만을 규정⁷⁾하고 있는바, 일자리사업평가는 동 규정에 포섭하기 어려워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평가 사업 예산을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사업비 중 어떠한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

6)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을 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여 의결한바,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일자리사업평가 사업의 한국고용정보원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고용정보원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재정법」을 준수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그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고용서비스⁸⁾의 평가 및 지원’을 근거로 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제도의 복잡·다양화로 기존 문구인 ‘고용서비스’만으로는 일자리사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바, 개정안과 같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일자리사업평가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

8)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서비스’를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